

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. 11. 9 선고 2021가단10553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등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코리아

담당변호사 이영대, 김희성

피 고 1. B

2. C조합

소송대리인 D, E

변 론 종 결 2021. 9. 7.

판 결 선 고 2021. 11. 9.

주 문

1. 피고 B은 원고에게 전북 고창군 F 임야 1091㎡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2020. 5. 20. 접수 제799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피고 C조합는 원고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20. 5. 20. 접수 제799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2020. 5. 20. 접수 제7994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, 원고와 피고 C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조합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G유한회사가 H(주민등록번호 1 생략)에 대한 판결(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4647, 갑 제6호증의 7)을 집행권원으로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(이 법원 1)을 하였고, 위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피고 B이 2020. 5. 20.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같은 날 위 부동산에 피고 C조합 명의의 주문 제2항 기재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(갑 제4호증, 갑 제6호증의 12).

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 당시 등기부의 소유자는 'H 고창군 J'라고 기재되어 있고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(갑 제4호증). 위 채무자 H(주민등록번호 1 생략)은 위 고창군 J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(갑 제7호증의 9) 반면 원고의 아버지인 망 H(이하 '망인'이라 한다)은 출생일부터 1972. 5. 28. 사망할 때까지 위 고창군 J에 줄곧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(갑 제1호증), 원고가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계속 농사를 지어왔던 것으로 보인다.

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의 당초 소유자는 망인으로서 현재에는 원고를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이 이를 공유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.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는 망인 또는 망인의 상속인들에 대한 집행권원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연무효이므로 위 강제경매절차에 따라 피고 B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하고, 이에 터 잡아 경료된 피고 C조합 명의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.

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. 비록 피고들이 이 사건 분쟁의 발생에 잘못이 없고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크게 다투지는 않았으나,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의로 말소등기 의무를 이행한 것은 아닌 점, 피고들은 별도의 책임 있는 자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비용을 포함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소송비용은

피고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였다.

판사 허윤범